

고시 제2017-211호

2017. 12. 14.

2018년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



목 포 시

2018년도 재정 전망과 운용 방향

1. 2018년도 재정전망

- 최근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치하는 가운데 낮은 물가상승세, 미국 대선 결과 등 국제경기의 불안정으로 큰 폭의 세입 확대는 기대하기 곤란
-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과 세입확충 노력에 따라 이전재원 수입도 다소 증가가 예상되나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감액과 대·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2016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
- 세출 수요는 저출산·고령화, 일자리 창출 등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지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지역개발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 수요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

2. 지방재정운용 여건

① 세입전망

- (지방세) 주민세, 재산세, 자동차세는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 변동성, 국제유가 변동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지방세 총액은 5% 소폭으로 상승예정
- (지방교부세) 정부 내국세 세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나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

- (국·도비보조금) 화물자동차고지 건설, 도시재생사업, 항만개발 사업의 일환인 연안정비, 도서기반 확충사업과 복지분야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,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시행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등으로 지속 증가될 전망

② 세출전망

- 국민행복연금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 투자확대, 노인·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확대 등 정부시책에 따른 세출수요 지속 증가
- 저출산·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여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될 가능성 높음
- 지속적인 복지비 증가는 도로건설 및 지역개발 분야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신규사업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무리 위주 및 주민 수혜도를 감안한 재정 배분 노력

3. 2018년도 재정 운용방향

-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『주민 중심의 재정, 행복한 자치』 구현을 위해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강화와 재정 지출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건전 재정 운용
- 일자리 창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사업 적극 발굴 및 투자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생활 안정 도모
-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자원 배분

예 산 총 칙

제1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
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 예산총액 | 일시차입 한도액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계 | 670,879,131 | 22,898,374 |
| 일반회계 | 576,346,742 | 17,290,402 |
| 특별회계 | 94,532,389 | 5,607,972 |
| 기타특별회계 | 24,046,135 | 721,384 |
| • 주택사업특별회계 | 813,082 | 24,392 |
| • 교통사업특별회계 | 19,035,434 | 571,063 |
| •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| 3,857,124 | 115,714 |
| • 기반시설특별회계 | 340,495 | 10,215 |
| 공기업특별회계 | 70,486,254 | 4,886,588 |
| •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22,000,000 | 660,000 |
| • 하수도사업특별회계 | 40,886,254 | 1,226,588 |
| •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| 7,600,000 | 3,000,000 |

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 과 같다.

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없음”

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조서” 와 같다.

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 와 같다.

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,542,700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8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8조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
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